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9. .

특 허 청
(디자인심사정 책과)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15호, 2022. 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제4항)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추가 연장권자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서 ‘특허청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제 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③ (생 략)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u>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u>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 내로 한다.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③ (생 략) ④ ----- <u>특허청장</u> ----- ----- -----.